
「2015년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용자사업」 공고

(재)한국사회투자자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용자사업을 진행합니다. 관계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5. 2. 13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1. 2015년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용자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기업 용자사업
 -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여 운영 안정화에 기여
- 소셜하우징 용자사업
 - 사회적경제기업의 주택사업 참여 기회 확대
 - 다양한 유형의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추구
-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 중간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적금융 활성화 및 저변 확대 추구
 - 중간지원기관의 채용자를 통하여 사회적가치 창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사회적경제, 사회적금융의 선순환구조 구축
- 사회적프로젝트 용자사업
 -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사회적가치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 추구

□ 사업별 용자조건

사업명	용자한도	용자기간/ 상환방식	용자금리	담보조건 (용자액기준)
사회적기업 용자사업	10~200 백만원/기업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연 2%	대표자등 보통보증 (필요시 공증, 담보권 추가 설정)
소셜하우징 용자사업	총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2,500 백만원/사업)	최대 2년 (건설사업) 최대 5년 (임대사업) 만기일시상환		사업 대상 부동산에 담보권 설정
중간지원 기관 협력사업	200~1,000 백만원/기관 (본사업, 기관 자부담액과 1:1 매칭) 30~50백만원/기관 (시범사업)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0% (재용자 금리 최대 연 4%)	대표자 등 보통보증
사회적 프로젝트 용자사업	총사업비의 50% 이내 (100~ 2,000 백만원/사업)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연 2%	대표자 등 보통보증 (필요시 공증, 담보권 추가 설정)

2. 용자사업별 개요

□ 사회적기업 용자사업

- 사업명 : 2015년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사회적기업 용자사업
 - 신청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
 - 서울소재기업 (사업대상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 외 소재 기업 가능)
 - 세부사업 분류
 - 경영합리화자금 용자 : 정부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되도록 지원
 - 대상기업에 경영합리화 컨설팅 실시
 - 컨설팅 결과에 따라 용자 검토
 - 매출조건부 운전자금 용자 : 매출 규모에 따라 단·장기 자금용자로 자금유동성 확보 지원
 - 과거(추정) 매출액을 바탕으로 용자규모 및 기간 심사
 -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연계용자
 - 협력기관을 통해 5백만원 이상의 크라우드펀딩을 성공하였거나, 투자를 받은 기업 중 추천을 받아 심사
 - 협력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 오마이컴퍼니, 와디즈
 - 협력 투자기관 : 행복나눔재단, D3Jubilee
- ※ 협력기관은 2015년 중 변경·추가될 수 있음

□ 소셜하우징 용자사업

- 사업명 : 2015년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소셜하우징 용자사업
- 신청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임대주택 공급(예정)자
 - 서울소재기업 (사업대상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 외 소재 기업 가능)
 - 공공성이 담보되는 市·공공의 사업수행자의 경우 용자 신청 가능
- 사업유형 분류
 - 건설사업 : SH공사에 매각 목적의 주택을 신축·리모델링하는 사업
 - 사업대상지 확보 및 설계, 인허가, 시공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
 - SH공사 매입 가능 조건 충족 (SH공사의 최근 공고 내용 반영)
 - 임대사업 : 민간의 임대·전대 목적의 주택 공급 사업

- 사업대상지 확보 및 설계, 인허가, 시공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
-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민간임대 또는 준공공임대 주택 등록
- 전대의 경우, 사업 특성 고려하여 용자액 산정, 담보·보증 탄력 적용

□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 사업명 : 2015년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 신청자격 :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 신청기관의 소재는 무관하나 사회적금융 수행 대상은 서울 소재에 한함
- 사업유형 분류
 - 본사업 : 기관 자부담액만큼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용자(1:1 매칭)하여 관련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사업
 - 시범사업 : 본사업 대비 용자한도를 하향 조정, 매칭조건을 폐지하여 소규모 중간지원기관이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
-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사회적프로젝트 용자사업

- 사업명 : 2015년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사회적프로젝트 용자사업
- 신청자격 : 사회적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 신청기업의 소재는 무관하나 프로젝트 수행·대상 지역은 서울에 한함
- 사업분야
 - 서울시에 추후 확장 가능성 등 사회적가치 창출 효과가 발생해야 함
 - 다자간 협업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다양한 추진 방법 인정
 - ‘서울시 2030 계획’의 주요 5대 분과인 복지·여성·교육, 산업·일자리, 역사·문화, 도시공간·정비교통, 환경·에너지·안전 프로젝트 우선

3.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

- 기 간 : 공고일 ~ 2015. 11. 30 (토·일, 공휴일 제외)
- 방 법 : 기간 내 수시 신청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서울시 중구 수표로 7, 2층 (충무로 2가 51-3 인성빌딩 2층)

□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부수	형태	비고
기본서류	공문	1부	원본	기업 자체 양식으로 제출
	용자신청서	1부	원본	한국사회투자 홈페이지(www.social-investment.kr) '사업공고' 에서 서식 다운 ※ 담당자 메일로 전자파일추가 제출
법인	유급근로자명부	1부	원본	기업소개서 내 '고용현황' 양식 참조 (기업소개서 기재로 대체 가능)
	주주명부	1부	사본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 포함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1부	사본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 자료 제출
	법인 정관	1부	사본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 자료 제출
	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번호증' 제출
	납세증명서(국세)	1부	원본	홈텍스(www.hometax.go.kr)발급
	납세증명서(지방세)	1부	원본	민원 24시(www.minwon.go.kr) 발급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1부	사본	임차사업장인 경우만 해당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	사본	- (해당 시) 외부감사보고서 제출 - 2015년도 신청일 기준 직전월 결산서/부속명세서 포함 - 비교식 재무제표만 가능(회계/세무사사무소 발급) * 국세청 발급 재무제표 사용불가 * 업력 3년 미만인 경우 설립 이후 분부터 제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면세)	각 1부	원본	- 2013~2015년 과세기간 분 제출 - 설립 1년 미만 경우 해당 과세기간 분 제출 - 홈텍스(www.hometax.go.kr)발급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원본	등기소 발급	
금융거래확인서(법인)	각 1부	원본	주채무 금융기관, 당좌개설금융기관 분 제출 ※ 대상자에 한함	
대표자	금융거래확인서(대표자)	1부	원본	주채무 금융기관, 당좌개설금융기관 분 제출 ※ 대상자에 한함
	주민등록 등본	1부	원본	민원 24시(www.minwon.go.kr) 발급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1부	사본	※ 대상자에 한함(전/월세 시)
기타 1	법인형태별 인증서	1부	사본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 사업보고서('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기제출한 최근 3개년도 분) - 협동조합(설립신고필증)/마을기업(지정서) 등 - 벤처기업확인서 등 기타 법인형태별 인증서
기타 2	부동산 사업의 경우 (소셜하우징 용자사업 등)	각 1부	원본 (사본)	해당 부동산 관련 서류 추가제출(토지이용계약서, 지적도, 토지·건축물 대장 및 등기, 매매계약서, 신고필증, 도면, 건축허가서, 건설업 실적, 기술자재직현황 등)
기타 3	매출조건부 운전자금 용자의 경우	각 1부	사본	계약서, 발주서, 계약이행보증금 납입영수증, 관련 세금 계산서 등 매출계약 일체 서류 * 지속적, 반복적 거래의 경우 관련 입증서류
기타 4	기타 추가자료 제출가능 (가점 반영)	각 1부	사본	- 기업소개서 내용증빙자료(외부 협력, 수상 실적, 전문기술 보유, 사회적성과 데이터 등) - 과거 사업수행실적, 투자확약서 등 재원조달 증빙자료, 추천서, 사회공헌실적, 외부감사보고서, 물적 담보 증빙 등

□ 서류 제출 관련 유의사항

- 위 제출서류는 전 사업 공통입니다. 단 기타 1~3의 경우 기업형태 및 신청 사업에 따라 선별적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기타 4의 경우 향후 세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에 범인 인감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재)한국사회투자자는 심사 중단, 융자금 회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재)한국사회투자자는 필요시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 심사 절차

- 서류심사→현장심사→심의·선정→결과발표→약정 체결 단계로 진행
- 신청 후 심사, 약정체결·융자까지 약 1~2개월 내외 소요 예정
(단, 심사일정은 (재)한국사회투자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 항목

- 기업역량(업력, 경영능력, 재무지표 등), 사업타당성(사업계획, 수익구조, 상환계획 타당성, 자금집행 필요성 등), 사회적가치(공익성, 사회적성과 등) 부분을 주로 심사함

심사 관련 유의사항

- 신청기관은 재단 요청 시 현장실태조사, 시설물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심사 관련 사항은 (재)한국사회투자자의 고유권한이며 심사 관련 자료는 비공개합니다. 심사항목 등 심사 세부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이 가능합니다.

5. 약정체결

결과 발표

- 최종 선정 후, (재)한국사회투자가 개별 통보

약정

- 구비서류와 일정은 개별 안내 후 진행

담보 및 보증

- 약정 체결 시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음

6. 상담 · 문의처

사회적기업 용자사업 (☎ 02-2285-4398, 02-2285-4393)

소셜하우징 용자사업 (☎ 02-2285-4396)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 02-2285-4399)

사회적프로젝트 용자사업 (☎ 02-2285-7548)